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보

http://www.seo.incheon.kr/

선	기관의장
람	

제1351호 2018. 4. 16(월)

차 례

고 시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----- 1

○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1호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---------- 2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**편집 : 홍보미디어과 [032-560-4146]**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50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▪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4. 16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· 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중봉대로 230 외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4. 1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-01호

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-159호(2017.12.04)로 공사완료된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 032-571-000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8. 4. 16.

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애경

1. 재건축사업의 명칭 :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   1)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82번길 16 (가좌동)
   2) 정비구역 면적 : 2,131.1㎡
   3) 이전고시 면적 : 2,131.1㎡

3. 시행자의 성명 및 사무소
   가. 성 명 : 1.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애경
   2. 두현종합건설(주) 대표 박상선
   나. 주 소 : 1.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82번길 16-3
   2.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3, 502호(원당동)

4. 준공일자 : 2017. 12. 04

5. 이전고시 내역

1) 토 지

구 분		위 치	지 목	면 적(㎡)	비 고
정비구역 면적 계			대	2,131.1	
이전고시 면적 계			대	2,131.1	
주택	대지	서구 열우물로 282번길 16	대	2,049.86	
근린생활시설	대지	서구 열우물로 282번길 16	대	81.24	
소계				2,131.1	

2) 건축시설

구 분	아파트	근린생활시설	비 고
연면적	6,498.713㎡	206.334㎡	6,705.047㎡
동 수	1		
층 수	지하1층~지상12층		
세대수(호수)	61세대	101호	

3)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상가 규모별 (전용면적기준) 공급호수	
	계(㎡)	52.826	56.085	58.891	59.636	59.978	59.339	59.300	63.894	74.727	계(㎡)	206.334
계	61	1	1	2	9	9	7	1	30	1	1	1
토지등 소유자	24	0	0	0	7	9	7	0	1	0	1	1
일반분양	37	1	1	2	2	0	0	1	29	1	0	0

4) 이전 설정 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역

구분	권리의 내용	권리개수	비고
	근저당권	28개	
	가압류	2개	
	계	30개	